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2가단1444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김병재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한

담당변호사 유용관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영준

변론 종결2024. 10. 22.

판결 선고2024. 12. 3.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과 D 사이에 2019.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8,507,39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와 D 사이에 2019.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18,507,397원, 피고 C는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9. 9. 2. D에게 2020. 3. 2.까지 1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후 F은 D과 130,000,000원을 지급하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금액이 모두 변제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F은 2019. 11. 20. D의 요청에 따라 D의 전처인 피고 B의 계좌로 70,000,000원, D의 아들인 피고 C의 계좌로 6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824호로 약정수수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13. "D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그 후 D이 위 판결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0445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7. 19.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D이 대법원 2024다276158호로 상고하였으나, 2024. 11. 1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을가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21. 9. 3.경 위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룬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등 참조).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3133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이에 F이 수원지방법원 2021나85747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송금행위가 기재되어 있는 F의 항소이유서가 2021. 9. 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항소이유서 송달 무렵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와 관련된 입금영수증 등의 서증은 2021. 11. 4.경에야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피고 B에게 70,000,000원, 피고 C에게 60,000,000원을 각 증여하였다.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22. 10. 28. 기준 D에 대해 합계 58,507,397원의 판결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B와 D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18,507,397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와 D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8,507,397원, 피고 C는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D의 요청에 따라 2019. 11. 20. 피고들의 계좌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D과 피고 B이 2017. 10. 26.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2, 3, 10호증, 을나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들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B은 2017. 11. 17.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D은 피고 B과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뒤에도 계속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계좌는 D이 G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였고[특히 피고 B이 H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명의인은 'B(G)'이다], 위 송금행위로 입금된 돈 역시 D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 D은 G을 운영하면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부족한 인건비 등을 차용하거나 변제하였고, 위 계좌를 통해 공사비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2019. 11. 20. 피고 C의 계좌로 60,000,000원이 송금된 후 2020. 4. 14.까지 합계 55,000,000원이 피고 B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2019. 12. 9.	5,000,000	2020. 2. 10.	5,000,000
2019. 12. 16.	5,000,000	2020. 2. 19.	5,000,000
2019. 12. 19.	10,000,000	2020. 3. 2.	4,000,000
2019. 12. 24.	5,000,000	2020. 3. 6.	3,000,000

2019. 12. 9.	5,000,000	2020. 2. 10.	5,000,000
2020. 1. 11.	10,000,000	2020. 4. 14.	3,000,000

(3) D은 원고에게 2021. 10. 16. 2,000,000원, 2021. 12. 31. 1,000,000원, 2022. 6. 15.

1,500,000원을 각 변제하였는데, 위 각 돈은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원고에게 입금된 것이다.

다) 설령 D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피고들도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송금행위를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들에 대한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태균